

202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6일 2021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함. 동 시행령은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임.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 1일 0.025% (연 9.125%)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 1일 0.022% (연 8.03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국기령 §62의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 심리내용에 다음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②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추가> <추가>	<input type="checkbox"/> 재심사유 추가 ○ 중요 사실판단의 명백한 오류 추가 } (좌동) ③ 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명백한 오류 ○ 심리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 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

<추가>

- 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법인령 §86의2)

< 법 개정내용(§50의2) >

<input type="checkbox"/>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li style="padding-left: 20px;">② 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법인령 §13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94의2 신설) >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소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 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상증령 §58의3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자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2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기관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

<개정이유>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인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p style="text-align: center;">* 「상증령 별표」 에 업종 열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p>

<개정이유>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특령 별표7의2)

< 법 개정내용(§10) >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input type="radio"/>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특령 §21⑤)

< 법 개정내용(§24) >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input type="radio"/>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既 발표: 총 31개 시설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❶ - [❷ × ❸] ❶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❷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❸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 (조특령 §14의2①, §14의4①)

< 법 개정내용(§16의2① · §16의4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추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①비과세, ②분할납부 및 ③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과세이연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
--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자회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벤처기업법」 §16의3에 따른 자회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개정이유>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자회사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 특례(조특령§14의4①)는 '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 (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16의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매수가액(행사가액)
--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p> <p>○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등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p>○ (손금불산입) 과세이연 적용을 받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p> <p>* 스톡옵션 행사차익(부여 시 시가 - 행사 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특례 적용 및 손금 규정 보완</p> <p>○ 시가 이하 발행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일 것 <p>* ①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p> <p style="margin-left: 20px;">② 1명당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p> <p>○ (좌 등)</p> <p style="margin-top: 20px;">- 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손금 산입</p>

<개정이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부가령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0⑧) >

<p><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p> <p>○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p>
--

현행	개정안
<p><신설></p>	<p><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p> <p>○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p> <p>○ 6개월 이내 → 1년 이내</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동) ② (좌동) |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좌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 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li style="padding-left: 20px;">(좌동)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좌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령 §70①)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input type="checkbox"/>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input type="checkbox"/>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부가령 §99)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input type="checkbox"/>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input type="checkbox"/>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무제출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동) </div>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국조령§11④)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 동)

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가>

<추가>

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 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 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 (경제적 모델 활용)

<개정이유>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국조령§11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p>□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통합거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 ① 그룹 내 통합계좌를 보유 : 참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② 통합계좌 없이 관리 : 관계회사 계좌 전체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 ② 순서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보상)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사용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용역거래 또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방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통합거래를 담당하는 관계회사 등 ②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보상) 통합계좌 참여시 정상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통합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산정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국조령515④)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비교 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 분석 ○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 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개정이유> 코로나19등 특수한 경제상황 고려(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Asia Pacific Tax Insights Ap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조세 및 투자관련
정보와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한 손에!

PwC의 AsiaPacific Tax Insights 앱은 조세와 비즈니스 인사이트 및 투자지역과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차원의 포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조세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상의 투자 목적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가별 비교를 용이하게 합니다.

Asia Pacific Tax Insights 앱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이응진 3781-2309
eung-jeon.lee@pwc.com

박종우 3781-0181
jongwoo.tice.park@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Tax Managed Services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글로벌 인력관리 및 세무자문 (People and Organisation)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오혜정 3781-9347
haejung.oh@pwc.com

진병국 709-4077
byungkuk.jin@pwc.com

홍창기 3781-9489
chang-ki.hong@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박수연 709-4088
soo-yun.park@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김운규 3781-9304
woon-kyu.kim@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양인병 3781-3265
in-byoung.yang@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정재훈 709-0296
jae-hoon_3.jung@pwc.com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